

|              |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br>결<br>사<br>항 |
| 의 결<br>연 월 일 | 2022. . .<br>(제 회) |                  |

농 립 수 산 식 품 투 자 조 합 결 성 및  
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김현수<br>(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2. . .               |

법 제 처 심 사 전

## 1. 개정이유

농식품 초기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직접 투자 근거 추가(안 제11조제3항)

- 1)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 여타 주체에 의한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농식품투자모태 조합 운용지침안에서 정한 경우’까지 확대

나. 투자심사 업무 전담 인력 수집정보 변경(안 제11조제4항)

- 1)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성계획서의 필수 기재 항목인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보고기한 연장(안 제17조제4항)

- 1)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

라. 타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별표 1)

-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근거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법 제명 및 관련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서 정한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14일 이내에”로 한다.

별표 1 제5호 중 “「과학기술 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국민건강 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4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5호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9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3호 중 “「임금채권 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8호 중 “「주택도시기금법」”을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3호 및 제6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64호

부터 제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 30.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  
화촉진기금
- 41.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64.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
-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66.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68. 「공탁법」 제28조에 따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기금
-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 7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  
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br>② (생    략)<br>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br>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br>수 있는 경우는 법 제11조제1항<br>제1호 ·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br>호까지의 자에 의한 <u>조합의 결<br/>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br/>한정한다.</u> |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br>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 <u>조합의 결<br/>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br/>는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 발전<br/>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br/>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br/>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br/>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농<br/>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br/>에서 정한 경우로 한다.</u> |
| ④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br>따라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br>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br>체”라 한다)에 투자를 목적으로<br>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br>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br>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br>결성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br>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④ -----<br>-----<br>-----<br>-----<br>-----<br>-----<br>-----<br>-----<br>-----                                                                                                                                                                           |

|                                                                                                              |                                                                        |
|--------------------------------------------------------------------------------------------------------------|------------------------------------------------------------------------|
| 제출하여야 한다.                                                                                                    | -----.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심사<br>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br>인적사항(성명, <u>주민등록번호</u> ,<br>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br>다)                      | 5. -----<br>-----<br>----- <u>생년월일</u> -----<br>-----<br>--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
| ① ~ ③ (생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br>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이 해<br>산한 날부터 <u>7일 이내</u> 에 농림축<br>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br>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br>다. | ④ -----<br>-----<br>----- <u>14일 이내</u> -----<br>-----<br>-----<br>--.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대상 기금**(제7조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3. 「공무원연금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5.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7.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8.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9.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11. 「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2.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
14. 삭제
1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7.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기금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23.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5. 「보훈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0.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32.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34. 「양곡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
3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36.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8.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 「외국환 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41.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43.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  
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
46.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8.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  
금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51. 「청소년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52. 「축산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53. 삭제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한  
강수계관리기금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

- 5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
-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6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62. 삭제
- 63.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 64.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
-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66.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68. 「공탁법」 제28조에 따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 7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1 - 1752 |